

# 2023년도 후쿠오카시 물가급등 긴급지원 급부금 (7만엔/세대) 안내

지급을 받기 위해서는, 수속이 필요합니다.

## ▶ 지급 대상 세대

- 2023년 12월 1일에 후쿠오카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일 것
- 현재, 세대 전원의 2023년도 주민세 균등할이 비과세일 것
- 세대중에 주민세 과세가 되는 소득이 있지만 미신고인 자가 없을 것
- 주민세가 과세되는 친족 등으로 부양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가 아닐 것
- 타 시정촌에서 같은 제도의 급부금(7만엔)을 받은 세대가 아닐 것

## ▶ 급부금의 지급액

1 세대당 7 만엔

## ▶ 급부금의 지급 시기

후쿠오카시가 확인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 
3주일 후가 기준입니다.

※서류 수리가 집중하는 시기는, 지급이 늦을 수 있습니다.

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속이 필요합니다.  
동봉한 확인서를 기재하신 후, 우송으로 제출해 주십시오.

**제출기한 : 2024년 4월 30일 (화)까지 ※소인 유효**

【제출처】후쿠오카시 물가급등 긴급지원 급부금 사무처리 센터

〒810-0041 후쿠오카시 주오구 다이묘 1초메 4-1 ND빌딩 2층

심사 상황 등을 문의하실 때 필요하므로

확인서 우측 밑에 기재된 문의 ID·패스워드를 기록하십시오.

문의용 ID·패스워드

ID :

패스워드 :

우측의 2차원  
코드를 스캔하면  
스마트폰  
등으로부터  
확인서의 제출이나  
심사상황 확인을 할  
수 있습니다.



※시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후쿠오카시의 물가급등 긴급지원 급부금의 상세한 정보는, 시 홈페이지를 보십시오.

**뒷면도 확인 바랍니다.**

## ▶ 급부금의 지급 수속

### ○ 확인서 우송하시기 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.

- 조세 조약에 의한 주민세 면제 신청을 하신 분이 있는 경우는,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- 세대주 또는, 세대원이 세금의 수정 신고 등을 하여, 주민세 균등할이 과세된 경우는,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- 확인 내용이 틀렸을 경우는 급부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. 또한, 의도적으로 허위 기재를 한 경우는, 부정수급으로 사기죄 적용을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.

### ○ 1 이체 계좌의 지정 2 대리인이 수급, 확인하는 경우 에 기입한 내용에 대해서

- 첨부 서류가 필요합니다. 확인서의 **同封必要書類** 이나, 기재예의 뒷면을 확인 바랍니다.
- ※서류가 미비한 경우, 추가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. 또한, 확인 작업에 시간이 걸려,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

### ○ 원칙적으로 계좌 이체이지만, 계좌 이체로 수령할 수 없는 경우는, 아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계좌이체가 아닌 지급인 경우, 지급 시기가 늦어집니다.)

## 구청이나 시청의 창구에서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.

- 확인서 내용을 확인하시면, 필요사항을 기입하셔서, 동봉된 환송용 봉투로 우송으로 제출하십시오.
- 확인서를 우송하시기 전에 재확인 부탁드립니다.
  - ①세대주 이름, ②기입일, ③연락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, 본인 확인 서류를 동봉했다.
  - 1 이체계좌 지정란을 기재해, 예금통장 등의 이체계좌를 확인 가능한 서류를 동봉했다.



### 「보이스 피싱 사기」와 「개인정보 사취」에 주의 바랍니다!

- 수속을 하는데 현금자동입출금기 (ATM)는,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급부금에 관한 일로 개인집을 방문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.

자택에 후쿠오카시 직원을 사칭하는 수상한 전화나 방문이 있던 경우는,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상담 전용전화(#9110)에 연락 바랍니다.

## 후쿠오카시 긴급 지원 급부금 콜센터

**Tel:0120-103-525**

접수시간 평일 오전9시~오후6시 (토·일·공휴일:휴무)

※대응 언어

영어, 중국어, 한국어, 베트남어, 네팔어

**FAX:050-1704-1925**

E-mail:r5kinkyushien@city-fukuoka-kyufu.com

이 광고지에 기재된 정보는, 후쿠오카시 홈페이지에  
다언어로 게재되고 있습니다.

